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신 정 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수도요금 이사정산의 경우 ‘아리수 앱’이나 ‘사이버 고객센터’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여 정산요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산된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분리고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,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민원분야 업무부담을 감소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또한 현행 급수업종 중 ‘공공용’이 2022년 1월 1일부터 ‘일반용’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인 ‘공공용’을 ‘일반용’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·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,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도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‘일반용’으로 적용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